

# 대구예술대학교 졸업인증영어시험에 관한 규정

(제정 2010.08.02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졸업인증영어시험의 운영과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대상)** 우리 대학교 학생은 재학(수료자를 포함한다) 중에 졸업인증영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, 신체장애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**제3조 (시험의 종류 및 합격기준)** 졸업인증 영어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공인 어학시험

가. TOEIC : 300점 이상

나. TOEIC Speaking : LEVEL 2 - 100점 이상

다. TOEFL : PBT 300점 이상, CBT 90점 이상, IBT 32점 이상

라. TEPS : 250점 이상

2.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시험 : 60점 이상(100점 만점), 다만, 시험을 모의 TOEIC, TOEFL 등으로 대체할 경우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.

3. 교양과목에 명시된 영어회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
4. 교류대학(영어권) 수학 : 학부과정 또는 영어연수과정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, 교류대학에서 수강 신청한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
**제4조 (시행방법 및 절차)** ① 제3조 제1호에 의한 합격자는 시행기관 발행 성적표를 소정기간에 국제어학센터로 제출하여야 하고, 국제어학센터에서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합격자 명단을 교무처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 제2호의 경우 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제3조 제3호의 경우 교과목 개설 및 학점취득자에 대한 관리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.

④ 제3조 제4호의 경우 교류대학 수학이전 국제어학센터와 교무처에서 승인한 것에 한하고, 수학 후, 수료증 및 관련서류를 소정기간에 국제어학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국제어학센터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합격자 명단을 교무처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응시자격 및 회수)** 우리 대학교에 재학(수료자를 포함한다)중인 학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, 응시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다만, 제3조 제1호의 경우 휴학생도 응시할 수 있으며, 동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료자는 이수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